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32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김소희·고동진·진종오

김상훈 · 김성원 · 이인선

이달희 · 박수민 · 박정하

정연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위해 매월 42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참전유공자 대다수가 고령으로 인해 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상향하는 한편, 해당하는 금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 산정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명시하여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는 한편,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현행법에도 신설하여 참전유공 자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등).

법률 제 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7항 중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를 "지급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⑧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정시 개별가구의 실제소 득에서 감한다.
- ⑨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던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	⑦
으로 지급하며, 그 <u>지급액 등은</u>	<u>지급액은</u>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
	조제7호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
	<u>상으로 한다</u> .
<u> <신 설></u>	⑧ 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민기
	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른 소득인정액의 산정시 개
	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감한다.
<u> <신 설></u>	⑨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
	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u>으로 정한다.</u>